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66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최혁진 · 정혜경 · 윤준병
조계원 · 이주희 · 강득구
안호영 · 이수진 · 황운하
손 솔 · 박용갑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충북·강원·충남 등 타 지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 어느 시멘트 공장에서 얼마나 사용되었고 해당 시멘트가 어디로 유통·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판매·유통 단계의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 나.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에 폐기물 반입량, 폐기물 사용 비율, 유해물질 검사 결과, 월별 사용량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의6제1항).
- 다.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판매처, 판매량, 공급 지역, 공급 대상 건설현장 등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의6제2항 신설).
- 라.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및 공공기관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 제품명,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정보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및 공공사업 정보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의6제3항 신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반출”을 “반출(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범위에서”를 “금액의 10배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의6제1항 중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폐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 및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량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및 생산량, 판매·유통에 관한 정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사용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대상,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로 한다.

1. 폐기물 종류

2. 폐기물의 원산지
 3. 폐기물의 구성성분
 4. 폐기물의 월별·전체 사용량 및 사용비율
 5. 폐기물 처리 위탁자 및 폐기물 반입량
 6. 유해물질 검사결과
 7.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 ②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판매·유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판매처
2. 판매량
3. 공급 지역
4. 공급 대상 건설현장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제품명,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정보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및 공공사업 정보 등을 통하여 입주예정자 등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7(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제조, 유통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8(친환경 대체원료의 사용 확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멘트제조과정에서 폐기물 사용을 줄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대체 원료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기물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 원료 사용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제66조제1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5 및 제1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제13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유통·판매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의6. 제13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사용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산, 판매·유통하거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생 략)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u>반출</u> 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u>반출(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생 략)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u>범위에서</u>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 <u>금액의 10배 이내의 범위에서</u> ----- ----- ----- -----.

③ (생 략)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

-----폐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 및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량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종류

2. 폐기물의 원산지

3. 폐기물의 구성성분

4. 폐기물의 월별·전체 사용량 및 사용비율

5. 폐기물 처리 위탁자 및 폐기물 반입량

6. 유해물질 검사결과

7.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판매·유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판매처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2. 판매량

3. 공급 지역

4. 공급 대상 건설현장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제품명,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정보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및 공공사업 정보 등을 통하여 입주 예정자 등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및 생산량, 판매·유통에 관한 정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사용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대상,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

제13조의7(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 ① 기후에너지

<신 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u>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제조, 유통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②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u>제13조의8(친환경 대체원료의 사용 확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멘트제조과정에서 폐기물 사용을 줄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대체 원료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기물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 원료 사용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65조(벌칙) ----- -----
--	--

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
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
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 27. (생략)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3. (생략)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
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공개한 자

<신설>

<신설>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
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공개한 자

5. ~ 27. (현행과 같음)

제66조(벌칙) -----

-----.

1. ~ 1의3. (현행과 같음)

<삭제>

1의5. 제13조의6제2항을 위반하
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유통
· 판매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의6. 제13조의6제3항을 위반하
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사용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공개

2. ~ 19. (생략)	<u>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u> 2. ~ 19. (현행과 같음)
---------------	---